

【 주간 포커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시사점

유진아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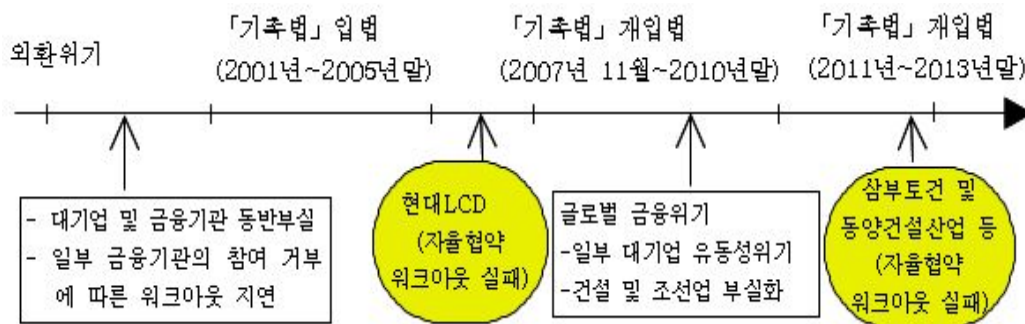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4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 원활하고 신속한 구조조정과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의 경우 경기불황 시 다수의 기업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발효되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보험회사의 채권회수율이 제고되어 자산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까운 시일에 동법의 효력이 발휘되고, 그에 따라 원활하고 신속한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과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의하면 부실징후기업의 총채권 잔액 75%를 보유한 금융기관이 동의하면 워크아웃¹⁾을 개시할 수 있음.
 - 기촉법 효력이 발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채권금융기관이 동의해야 워크아웃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합의 도출이 용이하지 않음.
 -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상시평가는 기촉법(제2항 제4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실행되며, 은행연합회의 상시평가 운용협약에 따라 평가방법과 시기를 결정
 - 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을 중심으로 매년 4~6월 정기적으로 실행
 -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평가 기준이 2010년 5월에 마련되었고 매년 7~10월 상시평가를 실시
-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도 기촉법이 필요한데 이는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에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

1)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

- 과거 기촉법이 실효되고 재입법되기 전 공백기간에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 실패 사례 발생
 - 1차 기촉법이 만료된 2006년 2월 현대LCD가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는데, 일부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협약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채권을 회수하면서 현대LCD는 부도처리
 - 최근 2차 기촉법이 만료된 후 삼부토건 및 동양건설산업의 경우에도 일부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채권회수를 결정함에 따라 이들 건설사는 법정관리 신청

<그림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입법 연혁



□ 금융기관이 경기 불황시에만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면 다수의 기업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될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변화에 따라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또한 부실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 건실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발생²⁾하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
 - 2009년 기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제조업체 수에서 약 10%³⁾를 차지하는 등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필요성이 높아짐.
 - 또한 부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로 부실상태가 만성적이고 재무건전성은 퇴출기업에 가깝기⁴⁾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

2) 이병기(2011), 부실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한국경제연구소
 3) 김준경(2011),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방향, 한국은행
 4) 이지연(2010), 기업부실 분석과 구조조정예의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 또한 건설 및 조선업의 경우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환경이 악화될 경우 다수의 부실기업이 발생하므로 그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요

<표 1> 건설 및 조선업 구조조정 현황(2010.12)

신용위험 평가 및 구조조정 현황	신용평가 C등급	신용평가 D등급	구조조정(C등급)		
			완료	진행	중단
1차 평가	11개 건설사 3개 조선사	1개 건설사 1개 중공업(조선)	2개 건설	7개 건설 1개 조선	2개 건설 2개 조선
2차 평가	13개 건설사 2개 중공업(조선)	4개 건설사 1개 중공업(조선)	4개 건설 1개 조선	4개 건설	5개 건설 2개 조선

자료 : 금융감독원

- 기촉법이 발효되면 건설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 보험회사의 채권회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보험회사는 기업대출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적용은 보험회사 자산건전성의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기업대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각각 72.6%와 81.8%

<표 2> 보험회사 규모별 기업대출 현황(2010.03)

(단위 : 조원)

	규모		기업대출	대출채권
	대기업	중소기업		
생명보험	4.52	11.98	16.51	64.49
손해보험	0.93	4.18	5.11	15.29

자료 : 보험통계연감

- 또한 보험회사가 보유한 PF 대출잔액은 4조 7천억 원인데 기촉법과 「PF대출 자율 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차별적으로 워크아웃이 실행되면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KiRi